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399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1. 제안이유

- 사회투자기금 '20년 결산결과 '21년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융자사업비 규모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위기극복을 위한 융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융자성 사업비를 6,000백만원 증액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반영함
- 나. 예치금 회수 증가분에서 융자성 사업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분을 차감한 잔액 4,680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함

〈표 2-1〉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0,154	31,549	11,395	계	20,154	31,549	11,395
전 입 금	8,500	8,500	-	용 자 성 사 업 비	17,500	23,500	6,00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7,142	7,142	-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780	2,495	715
이 자 수 입	65	65	-	기 본 경 비	20	20	-
기 타 수 입	100	100	-	예 치 금	854	5,534	4,680
예치금회수	4,347	15,742	11,395				

- 수입계획 : 20,154백만원 → 31,549백만원(11,395백만원)
  - 예치금회수 : 4,347백만원 → 15,742백만원 (증 11,395백만원)
- 지출계획 : 20,154백만원 → 31,549백만원 (11,395백만원)
  - 용자성 사업비 : 17,500백만원 → 23,500백만원 (증 6,000백만원)
  - 비용자성 사업비 : 1,780백만원 → 2,495백만원 (증 715백만원)
  - 예치금 : 854백만원 → 5,534백만원 (증 4,680백만원)

### Ⅲ. 검토의견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20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를 당초계획(43억 4,700만원)보다 113억 9,500만원 증액한 157억 4,200만원으로 계획하고,
-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당초보다 113억 9,5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 ①정책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당초 계획(192억 8,000만원)보다 34.8%, 67억 1,500만원 증액하고, ②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지출계획을 당초 계획(8억 5,400만원)보다 547.7%, 46억 8,0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해당됨

〈표 3-1〉 지출계획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통계목 <사업비 유형>	당 초 ①	변 경 안 (’21. 5 의회제출) ②	증 감	
			증 감 액 ③=②-①	증 감 륜 ③/①
합 계	20,154	31,548	11,394	56.5
<b>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b>	19,280	25,995	6,715	34.8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8,950	25,665	6,715	35.4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850	1,565	715	84.1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자성사업비>	350	470	120	34.2
이차보전금 <비용자성사업비>	500	1,095	595	119.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8,100	24,100	6,000	33.1
민간융자금 <융자성사업비>	17,500	23,500	6,000	34.2
출자금 <비용자성사업비>	600	600	-	-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330	330	-	-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330	-	-
사무관리비	330	330	-	-
<b>재무활동</b>	854	5,533	4,679	547.7
보전지출	854	5,533	4,679	547.7
여유자금예치	854	5,533	4,679	547.7
일반예치금 <예치금>	854	5,533	4,679	547.7
<b>행정운영경비</b>	20	20	-	-
기본경비	20	20	-	-
기금관리비	20	20	-	-
사무관리비	20	20	-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4446 (’21. 4. 9)

②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830 (’21. 6. 4)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융자사업비 규모 확대가 요청되어 민간융자금을 증액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일부 사실에 대해 소명하고, 개선한 이후 의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배제한 채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융자성사업비”, “비용자성사업비”로 지출계획을 임의구분하여 제출한 바,
    - 관련 법령과 기준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②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 뿐이며 기금운용계획에는 “융자성사업비”, “비용자성사업비”가 병기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효율적으로 설명되도록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열거함이 타당할 것이나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지난 '20년도에도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용자성사업비”, “비용자성사업비”로 지출계획을 임의구분하여 제출하고 있어 의회의 심사내용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은 아닌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치유하려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를 당초(43억 4,700만원)보다 113억 9,400만원 증가된 157억 4,100만원으로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재무활동**도 예치금을 당초(8억 5,400만원)보다 113억 9,400만원 증액한 122억 4,8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재무활동**이 당초(8억 5,400만원)보다 1,334.2% 증가되어 의회의 사전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4월,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출계획중 예치금을 일부 감액하여 다른 정책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증액변경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른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기재하지 않고, 당초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으로만 기재하고 있는 바,
-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출계획을 변경 요청하며 기금운용부서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도 오해될 수 있어 명확한 소명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